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77

발의연월일: 2025. 6. 9.

발 의 자: 백선희·신영대·김재원

이해민 • 이학영 • 신장식

김선민ㆍ허 영ㆍ김성환

황명선 · 서왕진 · 김준형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제59조의4제9항"을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이항 및 제9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 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다.
- 1. 자녀가 1명인 경우: 100분의 20
- 2.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분의 30
- 3. 자녀가 3명인 경우: 100분의 40
- 4.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	②
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	
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	
한 분(分)과 <u>제59조의4제9항</u> 에	<u>제</u> 59조의4제10항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	
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	
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	
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u>해당한다</u>)를 위하	<u>해당한다. 이하 이</u>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설>

<u>항 및 제9항에서 같다</u>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u>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u>
문에도 불구하고 기본공제대상
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100분의
<u>20</u>
2.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분의
<u>30</u>
3. 자녀가 3명인 경우: 100분의
<u>40</u>

4.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10

<u>⑨</u> (생 략)

① 제1항부터 <u>제9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라 한다.

<u>⑪</u> (생 략)

0분의 50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u> </u>				

① (현행 제11항과 같음)